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구자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91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20.

발 의 자 : 구자근 · 강승규 · 김선교
강대식 · 최수진 · 박준태
정동만 · 김위상 · 박덕흠
이만희 · 정점식 · 김도읍
강명구 · 박성민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관, 경로당, 노인교실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노인의 신체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계된 야외공원에서 규칙적으로 산책과 운동을 하고 인근 주민들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‘노인친화공원’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노인친화공원을 추가함으로써 노인이 야외에서 일상적인 신체활동을 하고 지역사회 구성원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심신 건강을 유지하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(안 제36조제1항제5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노인친화공원 : 노인의 건강증진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
야외에서 일상적 신체활동을 하고 지역사회 구성원과 교류를 할
수 있도록 설치된 공원 및 그 부속시설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36條(老人餘暇福祉施設) ① 老人餘暇福祉施設은 다음 각 호의 施設로 한다. 1. ~ 3. (생 략) <u><신 설></u> ② (생 략)	第36條(老人餘暇福祉施設) ① 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5. <u>노인친화공원 :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야외에서 일상적 신체 활동을 하고 지역사회 구성원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공원 및 그 부속시설</u> ② (현행과 같음)